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재공문)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청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함.(청약 미접수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 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 접수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람.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람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10.(예정))에 두산위브 홈페이지(www.weveapt.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1.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51번길 11일대
-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25층 / 6개동, 총 558세대 중 일반분양 250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25세대

주택구분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총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주택	39m ² A	39.9906	13.3931	53.3837	28.1245	81.5082	1
	39m ² B	39.9906	13.3931	53.3837	28.1245	81.5082	8
	46m ²	46.9618	14.9593	61.9211	33.0271	94.9482	19
	59m ² A	59.9857	19.5729	79.5586	42.1866	121.7452	48
	59m ² B	59.9331	19.6355	79.5686	42.1496	121.7182	19
	74m ²	74.9313	23.8458	98.7771	52.6975	151.4746	123
	84m ²	84.9043	26.4582	111.3625	59.7113	171.0738	32
합 계							250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85m²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는 예비추첨세대

구분		39A	39B	46	59A	59B	74	84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보훈대상자				1(1)	1(1)	1(1)	1(1)	4(4)	
	장기복무제대군인				1(1)		1(1)		2(2)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1)	1(1)		1(1)	1(1)	4(4)	
	장애인	경기		1(1)	1(1)	1(1)	1(1)	1(1)	1(1)	6(6)
		서울						1(1)		1(1)
		인천								0(0)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1(1)		1(1)		2(2)	
	북한이탈주민						1(1)		1(1)	
	우수선수						1(1)		1(1)	
	우수 기능인						1(1)		1(1)	
	의사상자						1(1)		1(1)	
	납북피해자						1(1)		1(1)	
	체육유공자						1(1)		1(1)	
소계		1(1)	2(2)	5(5)	2(2)	12(12)	3(3)	25(25)		

- ※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공급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일정 계획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모집공고일	2019.10.10.(木)		
건본주택 개관	2019.10.11.(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
특별공급 접수일	2019.10.15(火)	인터넷 청약 08시 ~ 17시 30분	아파트투유 인터넷청약 (http://www.apt2you.com) 및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 건본주택 방문접수
		방문접수 10시 ~ 14시	
당첨자/동.호수 발표	2019.10.23.(水)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http://www.apt2you.com)
계약 기간	2019.11.04.(月) ~ 06(水)		당사 건본주택

- ※ 모집공고일 등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바랍니다.(국민은행 접수불가)
 - 특별공급 중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닌한 자도 인터넷 청약신청이 가능 하오나 인터넷 청약신청 이전에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건본주택 방문청약은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정보)취약 자에 한하여 가능**

II.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10. 예정)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외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 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10. 예정)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일반 시군지역 (안양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대상자는 관련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또는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대상 기준 및 청약경쟁율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됨.

※ 해당기관 추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에 거주하는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추천바람.

- 입주선정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 선정하며, 당첨 및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6조 제4항, 제5항,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우선 공급(순번 및 선정 추첨방식)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동 . 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 관리되어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 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 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천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수 배정) 및 계약불가]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9. 10. 10(木) 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weveapt.co.kr>)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관련문의 : 1577-9322

#. 기타 사항(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10.(木) 예정)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①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건분주택 비치양식 사용 •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②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요망
	○		③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④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
		○	⑤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요망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될 경우 제출
		○	⑥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⑥,⑦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⑦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⑦ 제출
		○	⑧청약통장가입(순위)확인서	본인	•금융결제원 청약홈페이지 및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철거민,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 제외(그 외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출)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		①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②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생략
	○		③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④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⑤인장	대리인	